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17. 11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본 안내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7년 7월 26일 시행, 법률 제14839호)』을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안내서의 판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본 안내서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또한, 이용 · 가공 ·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http://spam.kisa.or.kr>) 자료실에 게시됩니다.

제 · 개정 이력

순번	제 · 개정일	변경내용	발간팀	연락처
1	2014.12	제정	스팸대응팀	118
2	2015.09	개정	스팸대응팀	118
3	2016.06	개정	스팸대응팀	118
4	2016.12	개정	스팸대응팀	118
5	2017. 11	개정	스팸대응팀	118

CONTENTS

I.

개정 배경 및 법령 구성

-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1
- 2. 법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2
- 3. 개정 법령의 구성 및 주요내용 4

II.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 1. 용어 정의 9
- 2. 수신동의(Opt-in)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10
- 3. 수신동의(Opt-in) 예외 15
- 4.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18
- 5.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20
- 6.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22
- 7. 광고전송자의 금지사항 24
- 8.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27
- 9. 처리결과 통지 28
- 10. 수신동의 여부 확인 31
- 11. 광고전송 위탁 34
- 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36
- 13.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 39
- 14.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41
- 15.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44
- 16.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45

III.

부 록

- [부록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49
- [부록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59



I. 개정 배경 및 법령 구성

I. 개정 배경 및 법령 구성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가. 스팸의 개념

-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함) 제 50 조부터 제 50 조의 8 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스팸방지의 필요성

-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이문서로 된 광고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광고성 정보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수신자가 수신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송자가 무작위로

이를 전송을 하고 있어서 수신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신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이용자는 불필요한 정보를 확인·삭제·거부하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등 이용자 개인의 피해와 더불어,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스팸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스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여 왔지만, 스팸 전송 기술 역시 꾸준히 발달함에 따라 스팸 차단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성 정보는 전송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정부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협력하여 국민들의 스팸 감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통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법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가.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배경

- 스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하여 문자를 조작한 변조 스팸 문자가 급증하는 등 스팸 전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규의 변화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광고문자 내 특정 단어가 스팸메시지에 해당하면 문자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이미지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별도의 차단서비스가 없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

- 스팸을 보내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면서 이용자의 집중력 저하나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피로가 더 커졌습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스팸 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이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나.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사전 수신동의를 한 경우에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의 수신에 따른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의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스팸필터링 우회 등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의 차단에 따라 국민들의 스팸 수신에 따른 피로도와 스팸 발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가 기대됩니다.

다. 스팸 규정의 적용 대상

- 정보통신망법 제 50 조는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는 규정입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관련 규정은 이용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 이메일과 같이 이용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특정 매체로 이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TV 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 · 팝업 광고 등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광고에 해당하지만,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해당 광고가 노출되는 곳으로 접근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 광고로 스팸 규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와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개정 법령의 구성 및 주요내용

가. 구성

- 스팸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 50 조부터 제 50 조의 8 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제 50 조는 제 1 항부터 제 8 항까지 두고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제 50 조의 4 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한 및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역무제공 거부 및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는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 주요내용

법조문	내 용	관련 시행령 내용
제50조제1항	사전수신동의에 의한 광고 전송 제한 및 거래관계 · 육성TM에 따른 수신동의 예외 등	거래관계에 의한 수신동의 예외 기간
제50조제2항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제50조제3항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예외 매체
제50조제4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사항	표기의무사항 주요내용
제50조제5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조치	
제50조제6항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부담 금지	무료로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제50조제7항	수신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통지 기간 및 통지 사항
제50조제8항	정기적인 수신동의확인 안내	확인 안내 기간 및 방법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한 및 의무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8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서비스 광고 금지	



II.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II.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용어 정의

법 률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 정의규정

- 전자적 전송매체란 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의미합니다.
- 전자적 전송매체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은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 제한이 없습니다.



2. 수신동의(Opt-in)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법 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시 행 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 Opt-in 방식 채택¹⁾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광고성 정보’라 함)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Opt-in방식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Opt-out방식은 수신자에게 우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지만 거부의를 밝힌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하지 못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이외에 인터넷상(카페 · 블로그 · SNS 등)에서 쪽지를 통해 마케팅을 하는 경우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등에도 사전 수신 동의를 받아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나. 수신동의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사전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수신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22 조제 4 항 동의는 전송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할 뿐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구분되기 때문에 위 두 개의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이용약관에 넣어 약관동의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 수신자에게 약관내용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문구를 별도로 표기하고 약관동의를 받아야 명시적인 수신동의의 효력이 있습니다.

※ 별도 표기 예시 : “본 약관내에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 을 다운받아 단순히 설치만 한 상태에서는 광고성 정보 (앱 푸쉬 광고) 를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 앱을 단순히 실행만 한 상태 (로그인 전) 에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은 후 광고를 전송하여야 하며 , 이용자가 앱에 ID/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로그인 한 이후에는 이용자 식별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수신동의여부 설정에 따라 전송하면 됩니다 .

- 휴대전화 등의 앱 푸쉬 알람 ON/OFF 기능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별개이므로 푸쉬 알람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 앱 푸쉬 광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앱 푸쉬 광고 안내서 및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자료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팸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신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게 있습니다 .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수신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 , 이메일 , 팩스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에 관한 정보 , ②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단 아래 “라” 의 경우는 제외함)

- ※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보내는 홍보문자, 영리목적 기관이 고객에게 보내는 뉴스레터 등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 쿠폰의 경우 쿠폰 자체가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쿠폰발급안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영리법인은 존재목적이 영리추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전송하는 모든 정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은 전송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 광고성 여부를 판단 합니다.
-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 신용카드 거래내역 (결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메일 하단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

- 전송자와 수신자가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확인, 보증, 안전, 보안, 업데이트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안내 정보 (회원 등급 변경 · 포인트 소멸 안내 등)
 - ※ 포인트 소멸 안내시에는 소멸일과 소멸되는 포인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수신자가 쿠폰을 구매하거나 명시적으로 쿠폰 발행을 신청하여 제공된 쿠폰의 소멸안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지만,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제공 (회원가입 기념 쿠폰, 고객 생일 기념 쿠폰, 1 주년 기념 쿠폰 등) 한 쿠폰의 소멸안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합니다.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 회성 정보 (견적서 등)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
-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재화를 구매하면 경품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안내를 받고 수신자가 재화를 구매한 경우 수신자가 경품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봄)
- 전송자가 제공하는 (판매하는) 서비스·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 ※ 기업 등이 무상으로 진행하는 공익활동 안내 정보 (장학금 지급 등) 가 이에 해당
-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이용자와 명시적인 계약체결을 하여 정보를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서비스·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 ※ 일기예보 앱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 택배추적 앱에서 제공하는 택배 위치 정보, 미디어 매체에서 제공하는 뉴스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 상품가격비교 정보는 상품 구매와 관련이 있으며, 주식정보는 주식 구매와 관련이 있으며, 할인항공권 정보도 항공권 구매와 관련이 있는 정보로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정보는 정보제공을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1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 (클릭 등) 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 를 취해 전송하는 간단한 광고 안내 정보
 - ※ 1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로는 “요금고지서”, “카드결제내역”, “보험료 결제내역” 등 월별 결제 안내 등이 포함되지만 수시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포인트 발생·소멸 안내, 실시간 결제 내역 안내 등은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음
 - ※ 수신자가 클릭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가 노출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 안내 정보가 비광고성 정보의 가시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 전송자가 취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한하여 광고 안내 정보 전송이 가능

- 본 ‘라’에서 열거한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수신동의 요청 안내 정보
 - 본 ‘라’에서 열거한 정보에 부수적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 단, 부수적으로 간단한 인사말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합니다.

마.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수신동의(Opt-in) 예외

법 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시 행 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가. 수신동의의 예외(거래관계에 의한 예외)

- 수신동의 예외사유로서 거래관계라 함(이하 ‘거래관계’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전송하려는 광고성 정보와 동종의 재화를 구매하였거나 동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 동종의 재화나 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것임을 수신자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 합니다.
- 거래관계가 있는 날부터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 6개월까지는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동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산점은 최종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이 끝난 날입니다.
- 단순한 문의나 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대리운전회사에 문의전화만 한 경우나 꽃집에 꽃바구니 가격에 대해 문의전화만 한 경우 등에는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거래관계에 의한 수신동의 예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여야 합니다.
 - ※ 영업점을 인수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고객명단(연락처 포함)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아니므로 수신동의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 ※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 대신 구매자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준 경우와 같이 타인이 광고성 정보 전송자를 위해 수집하여준 경우에도 직접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자가 사업자(B2B)와의 거래관계 형성을 위해 명함 등 서면으로 직접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수신동의 예외로서의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명함 등 서면으로 연락처의 제공이 있는 경우 거래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거래관계가 있다고 봄
 - ※ 수신동의 예외사유로 B2B 거래관계를 주장하려는 자는 단순히 명함 등의 소지뿐만이 아니라 수신자에게 언제 어디서 명함 등을 직접 제공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나. 수신동의의 예외(전화권유판매 예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지위를 가진 전화권유 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 권유판매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전 수신동의 예외에 해당 합니다.
- “육성”이라 함은 광고 문구를 녹음한 ARS 나 기계음이 아니라 직접 대화가 가능한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담원이 육성으로 녹음한 음성 및 기계음의 ARS 로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우선 상담원이 녹음한 음성으로 안내 후 상담원과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화권유판매자’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화상으로 단순히 광고성 정보만 제공하고 재화 및 서비스 등의 판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란 전화권유판매자가 알고 있는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획득하였는지 안내하여야 하는 것으로, 광고성 정보를 안내하기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광고성 정보를 안내하기 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수신동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 한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자의 광고성 전화를 한번에 수신거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https://www.donotcall.go.kr>)”에 등록 하면 됩니다.

- 보험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²⁾ 수신동의를 받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4.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법 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의 의미

- 제 1 항에도 불구하고라 함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거나 수신동의 예외에 해당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를 의미합니다.

나.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①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②사전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수신동의를 철회한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됩니다.

다. 수신거부 의사표시

- 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됩니다. 또한 고객이 수신거부 후 다시 거래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원탈퇴를 하는 것도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탈퇴를 한 수신인에게 거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를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

라. 수신동의 철회

- 법 제 50 조 제 1 항에 따라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에 대하여 사전에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이 금지됩니다.

마. 수신동의철회 및 수신거부의 효력

- 수신자가 특별히 범위를 정하여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당해 광고만이 아니라 당해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됩니다.
- ※ 060 성인전화 광고나 대리운전 광고 등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면 의사표시를 받은 전송자가 전송하는 모든 영업 번호에 대한 광고는 수신거부 대상이 됩니다.

- 본사와 지사, 본사와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공유할 경우 수신거부 의사도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한 번의 수신거부로 해당 본사 및 지사, 대리점에서 전송하는 광고에 대한 수신 거부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5.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법 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 행 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가. 야간광고 전송의 제한

-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이하 “야간시간”이라함)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즉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수신동의를 받았거나 거래관계에 의한 수신동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국외에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도 동일함).

나. 야간광고 전송제한의 예외

- 예외적으로 야간시간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야간 광고 수신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 전자우편은 다른 매체에 비해 광고 수신에 즉시성이 떨어져 이용자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고 해외에서 발신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야간시간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우편 이외의 매체를 이용하여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6.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법 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시 행 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이하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함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각 전송매체별 명시하여야 할 사항 및 명시방법 (부록 1 참조)

나. 전송자의 명칭

- 명칭은 수신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송자가 표기한 명칭만으로 수신자가 전송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송자의 명칭을 표기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수신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업체명(웅이네 마트, 건강안경원 등)·서비스명(마스터 대리운전, 마스터 퀵 등)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전송자의 연락처

- 연락처는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다른 연락처를 안내하는 경우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라.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 수신거부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동 조치 및 방법으로 수신거부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전자우편을 수신거부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도록 하는 것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 각 전송매체별 자세한 명시사항과 명시방법은 이하“부록 1”참조

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매체별 표기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7.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법 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의 금지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방법 및 연락처를 부적절하게 기재하거나 이를 변칙표기 하여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변칙표기라 함은 수신자의 필터링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료수신거부 번호 080-1234-5678 중 '080' 을 '080' 이나 '공팔공' 등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를 '광고' , '(광 고)' , '(광 / 고)'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송자의 이메일 주소를 타인이 수신하도록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메일에서 ‘수신거부’를 클릭하였는데 페이지오류가 뜨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를 이미지 형태(jpg · gif · png 파일형식 등)로 보내어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는 것도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 본 규정은 적극적으로 “회피 · 방해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제 50 조 제 4 항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소극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과 구분됩니다.

나.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의 금지

- 광고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숫자 ·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자동으로 수신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 등의 연락처를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010-1234-XXXX 와 같이 끝 네 자리를 1 부터 9999 번 까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나 상담원이 직접 번호를 누르지 않고 오토콜 프로그램 등에서 자동으로 번호를 생성하여 전화를 거는 경우 등

다.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의 금지

- 광고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라 함은 고객에게 받은 연락처를 전산 상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 혹은 정보저장장치 등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수집하여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음성광고(ARS 등)의 발신번호는 본인명의로 등록된 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타인명의로의 번호 등으로 변작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이메일 주소로 변작하여서는 안됩니다.
-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경우 발신자의 번호를 삭제하거나 타인의 번호로 변작하여서는 안됩니다.
- 팩스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번호를 공란이 되게 하거나 타인의 번호로 변작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수신자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 수신자의 회신을 받기 위하여 벨이 1~2 번 울린 후 수신자가 받기 전에 끊거나 받은 후 바로 끊는 방식으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접속을 유도하는 행위(원링 스팸 등)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원링스팸은 다량의 호를 발신하고 수신자가 받기 전에 이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다량의 호를 발생한 정보는 있지만 통화기록이 없는 경우나 다량의 통화호의 통화시간이 1~2 초 이내인 경우 등의 사실을 토대로 통신사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징역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8.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법 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 행 령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무료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 제공

-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경우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 내용에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수신자가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무료” 와 같이 무료임을 안내하는 문구와 “080-1234-5678” 와 같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을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로 해당 정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각 전송매체별 자세한 명시사항과 명시방법은 이하 부록1 참조

다.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9. 처리결과 통지

법 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시 행 령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결과와 통지) 법
»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가. 처리 결과의 통지

-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당해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³⁾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지내용에는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③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④처리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사표시 날짜를 “금일” 또는 “오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차후에 해당 날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 전송자의 명칭은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에서 언급한 내용을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
- 처리결과 통지의 기산점은 수신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수신동의를 한 경우 시스템에 등록 여부는 상관없이 의사표시를 한때부터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 처리결과 통지에는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여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가 휴대전화에 “(광고)” 등을 차단문구로 지정하여 둔 경우 처리결과 통지에 광고를 포함하여 전송을 하면 수신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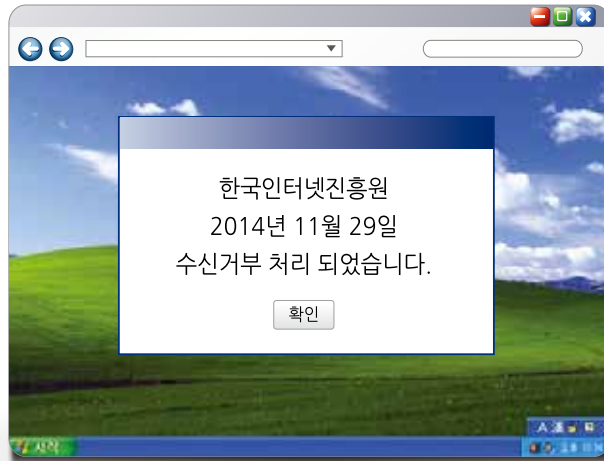
나.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

-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 다수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전송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통지하여도 됩니다. 단 전송자의 명칭, 의사표시 사실 및 날짜, 처리결과를 모두 안내하여야 합니다.
- 080 번호 등을 통하여 음성으로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곧바로 이를 처리한 후 육성이나 ARS 음성 등을 통하여 처리완료 사실을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안내하여야

3) 해당 의사표시가 전송자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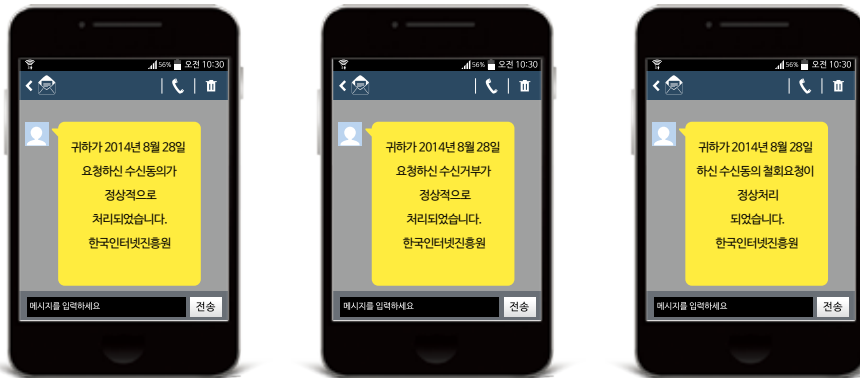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 등에서 수신동의 설정 변경시 이를 즉시 처리 한 후 팝업창이나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안내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처리결과 문자SMS 통지 예시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 나 ‘무료수신거부 번호’ 등을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0. 수신동의 여부 확인

법 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 행 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가. 수신동의 여부확인

-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했다는 사실을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한번씩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수신동의 후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사실 안내를 하는 것이어서 2년 이내에 아무 때나 안내를 하여 주어도 됩니다.
- 2년이 도래하는 각각의 수신동의자에게 매일매일 안내하여도 되지만 일정한 기간동안 수신동의한 이용자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하여도 됩니다.

ex)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수신동의한 수신자에 대해 2017년 3월경에 일괄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수신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는 경우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 수신동의 여부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신자가 로그인 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가 수신자에게 전송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년간 로그인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별도로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신동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해당 수신동의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 의무도 소멸됩니다.

- 수신동의 후 수신동의 철회를 하고 다시 수신동의를 하는 것과 같이 수신동의와 수신동의 철회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한 수신동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수신동의 여부를 안내하려고 하는 자는 수신동의자에게 이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전송자의 명칭
-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 ※ 수신동의 날짜는 수신동의를 한 날짜를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수신동의를 한 특정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범위반에 해당합니다.
-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다.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봄

라. 수신동의 확인 문자SMS 예시



마.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1. 광고전송 위탁

법 률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가.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위탁자)라 함은 모든 광고행위에 대한 실질적 권한 및 의무를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위임한 자로,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타인에게 위탁을 하여 전송을 하는 자는 위탁을 받은 자가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발송을 위한 환경만을 제공해 주거나 광고주의 지시에 따라 광고주가 제공한 연락처로 이미 정해진 광고 내용의 발송업무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대행할 뿐인 경우에는 위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전송될 광고문안의 작성이나 광고대상자의 선정 등과 같이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나 계약이나 약관에 따라 광고성 전송과 관련 업무처리를 약정한 경우 등에는 위탁에 해당합니다.

※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외부 업체 등 제 3 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내용 안에 ‘대행업체가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는 내용 및 ‘위반 시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나. 법 위반시 배상책임 등

- 위탁을 받은 자(수탁자)가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그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봅니다.
- 즉, 광고성 정보 전송업무를 위탁한 자가 위탁을 받은 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민법 제 756 조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즉, 위탁을 받은 자(수탁자)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광고를 위탁한 자(위탁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만, 위탁자가 전송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수탁자에 대해 전송업무와 관련한 법령준수교육이나 위반사례나 모범사례 등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법 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와 관한 사항을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의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4)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는 이동통신사업자, 유선전화사업자, 대량문자 발송사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나. 이하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의무제공의 거부를 할 수 있음(제1항)

-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서비스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광고성 정보의 전송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이용계약에 따른 거부(제2항)

- 제 1 항 또는 제 4 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이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서비스이용약관에 의무 제공 거부 사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 제공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라. 고지의무(제3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1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의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다만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지체 없이” 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를 의미합니다.

마. 역무제공 거부 및 취약점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제4항)

- “필요한 조치”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가 법 제 50 조 또는 제 50 조의 8 에 위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 역무제공 거부 및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 취약점 개선은 필요한 조치의 예시에 해당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스팸이 전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필요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역무제공 거부)를 하여야 하며,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바. 제50조의4제4항에 위반하여 해당 역무제공을 거부하지 않거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불법 스팸(도박, 불법 의약품, 불법대출 등의 광고)이 전송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제 50 조의 4 제 4 항에 따른 역무제공 거부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전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재판매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불법스팸 전송하여 이용제한을 당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

신규회선을 개통하여 주거나 이용가능한 회선수를 늘려주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불법 스팸 전송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조치의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 50 조의 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

법 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 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시 행 령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 · 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 장치를 말한다.

가. 설치 동의 대상

- 이용자의 PC 등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팝업형태의

광고를 띄우거나 시작페이지를 특정 홈페이지로 고정하는 악성 스크립트⁵⁾ 및 Adware⁶⁾ 등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설치 대상 매체

-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 장치란 태블릿 PC, 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의미합니다.

다. 동의 방법

-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프로그램 설치 전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고지한 후 설치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용자가 자신의 PC 등에 설치될 프로그램이 광고성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 등을 프로그램 다운로드 전에 식별이 용이한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단순히 모든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운용체제가 자동으로 띄우는 경고창의 문구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에 “예”를 선택하였다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특정 사이트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이 웹사이트에 프로그램 되어져 있던 Java Script나 Active · X Component들이 자동으로 접속자의 시스템에서 실행되어 웹 브라우저의 초기 시작페이지 및 컴퓨터의 부팅 시에 자동으로 시작되게 하는 레지스트리 키 값을 추가하거나 변경 프로그램

6) Adware는 일반적으로 쉐어웨어 제작자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가로 설치이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작 페이지가 특정 사이트에 고정되거나 프로그램 사용시 사용자의 일부 정보(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상업 광고를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게 하는 프로그램

라.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의 훼손, 멸실, 변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제 2 항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14.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법 률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 의사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광고성 정보 게시

- 제 1 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형식의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 광고성 정보 게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게시판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예외

-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 합니다.
-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별도 인증과정 없이 바로 누구나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봅니다.
- 따라서 로그인을 하여야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은 별도의 권한을 요하는 게시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 명시적인 게시 거부 의사 표시

-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라도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대한 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게시 거부 의사는 게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할 필요가 없으며,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을 해당 게시판 상단이나 메인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일괄 게시하면 됩니다.

- “광고글이나 남에게 피해가 되는 글들은 예고 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문구도 ①거부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며, ② 거부의 의사표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대한 게시를 거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 사전동의 철회

- 게시판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광고성 정보의 게시를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시하면 안됩니다.
-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는 게시자가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방법의 제한은 없습니다.

마. 삭제조치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올라온 광고성 정보 게시물은 운영자나 관리자가 별도의 공지 없이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광고게시동의를 받지 않거나 광고게시거부의 의사표시를 받고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5.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법 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송금지 광고성 정보

-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및 표기의무 사항 준수와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역무제공 거부(서비스 계약해지 등)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광고 행위자체를 처벌⁷⁾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별도로 본 규정도 적용됩니다.

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7)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및 약사법 제61조 등



16.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법 률

제7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가. 광고성 정보 관련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간접적인 지시나 요구 등의 행위 판단 기준으로는 ①해당 광고자의 마케팅 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②스팸을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지속적으로 활용 되도록 방치하거나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③ 광고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지인에게 이벤트 문자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벤트 문자를 전송한 고객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경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하도록 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법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부 록

부록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1. 전자우편

가. 제목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본문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메일 광고의 경우 발신 전자우편주소가 회신이 되어 수신이 가능한 주소인 경우 본문에 전자우편주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가 본문 내에 “[수신거부]” 등을 눌러 곧바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다른 정보를 요구하여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러한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광고) 광고성 메일 전송 방법 알려드립니다.

보낸사람 ABC@kisa.or.kr
보낸날짜 Thu, 28. Aug. 2014 14:15:31
받는사람 kisa@kisa.or.kr



추후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한국 인터넷 진흥원 (ABC@kisa.or.kr)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 아래와 같이 메일 화면에서 곧바로 수신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메일은 2014년 10월 24일 기준 회원님의 메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을 동의하였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개인정보변경에서 E-mail 수신 여부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do not wish to continue receiving updates from us please log-in and change your

E-mail condition 'yes' to 'no' in the preference page)

본 메일은 발신전용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수신거부] 클릭시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메일 수신거부 신청 페이지 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메일을 수신거부 하시겠습니까?
(kdwyjy@daum.net)

This Page is to unsubscribe KISA E-mail.

To unsubscribe e-mail, click on the "예" button.
(kdwyjy@daum.net)

예

아니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메일을 수신거부 하시겠습니까?

수신거부 후, 다시 메일을 수신하고 싶으실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에서 이메일 수신여부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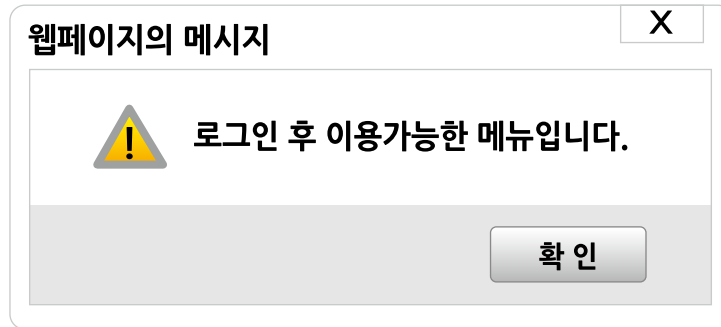
이메일 수신거부

수신거부하시겠습니까? (Are you sure to unsubscribe?)

예(Yes)

아니오(No)

· [수신거부] 클릭시 아래와 같이 로그인 등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2. 모사전송(팩스)

가. (광고)등 표시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 전송자 명칭, 연락처 등은 광고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광고) 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5118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광고)”를 시작되는 부분에
명시하도록 삽입

KISA 캐피탈

금리인하 상품출시
개인 신용 대출을 최저금리로
최고 5000만원까지..
무담보! 무보증 가능

신용대출 상담 - 김미경 팀장
H·P 010-1234-5678

광고 내용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1/3이상의
크기로 명시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무료전화 080-1234-56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

가. 광고의 안내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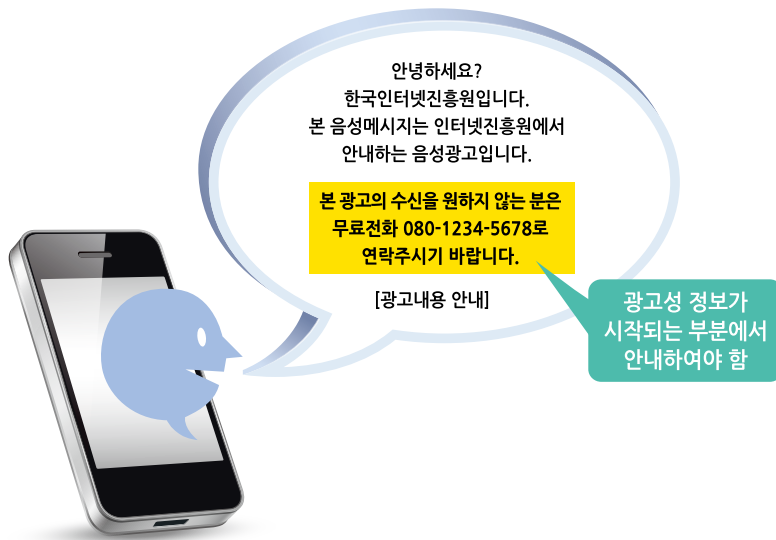
※ 전화번호 및 주소의 경우 전화번호와 주소를 모두 표시하여야 하지만 전화번호 또는 주소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면 됨

- (광고),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거부 방법 등은 광고 본문 안내가 나오기 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4. 그 밖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

가. (광고)등 표시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는 광고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문자광고의 경우 연락처가 회신번호와 동일하고 통화버튼을 눌러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LMS 및 MMS 문자와 같이 제목을 넣어 전송이 가능한 경우 (광고), 전송자 명칭 등은 반드시 광고 본문 내용 맨 앞에 넣어 전송하여야 하며, 제목에 넣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 휴대전화 별로 제목이 표기되는 휴대전화도 있지만 표기되지 않는 휴대전화도 있습니다.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법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 법 시행령 제 62 조에 따른 별표 6 에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임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5. 공통사항

가. (광고)의 표시 기준

-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 (필터링)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 부호 ·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광 / 고), (광 고), (광 . 고), (“광고”), (대출광고)와 같이 변칙 표기하여서는 안됩니다.
- 전송자가 통신사업자, 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광고성 정보의 표시의무사항을 이미지파일로 하여 전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부록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 형사처벌

위반 조항	처 벌
제50조제5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의8	



2. 과태료

위반 조항	처 벌
제50조제1항~제4항, 제6항, 제8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제2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3.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제50조제1항~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제2항	750	1,500	3,000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300	600	1,000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됨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함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